

보도시점 2025. 1. 15.(수) 12:00  
(2025. 1. 16.(목) 조간)

배포 2025. 1. 15.(수) 09:00

## AI기본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 국무회의(1.14) 의결을 거쳐 1년의 경과 기간 뒤 '26.1월 중 시행 예정
-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을 통해 후속 정책 이행에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본회의('24.12.26)를 통과하였다. 이후 1월 14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26.1월부터 시행된다.

\*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야) 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이훈기.  
(여·야 공동) 조승래·이인선 2건 김우영·이정현·황정아·이해민·정동영·최민희

동 법안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하여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오늘(15일) Kick-off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AI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하여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T/F(5개, 각 10여명의 민간전문가 참여)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주요 사항 >**

- AI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제33조)
-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제34조)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제32조)
-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제35조)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제31조)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AI기본법 제정을 함으로써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남철기 (044-202-6270)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근 (044-202-6275)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	책임자	팀장	이은규 (02-2224-4140)
	정책제도팀	담당자	서기관	황경진 (02-2224-4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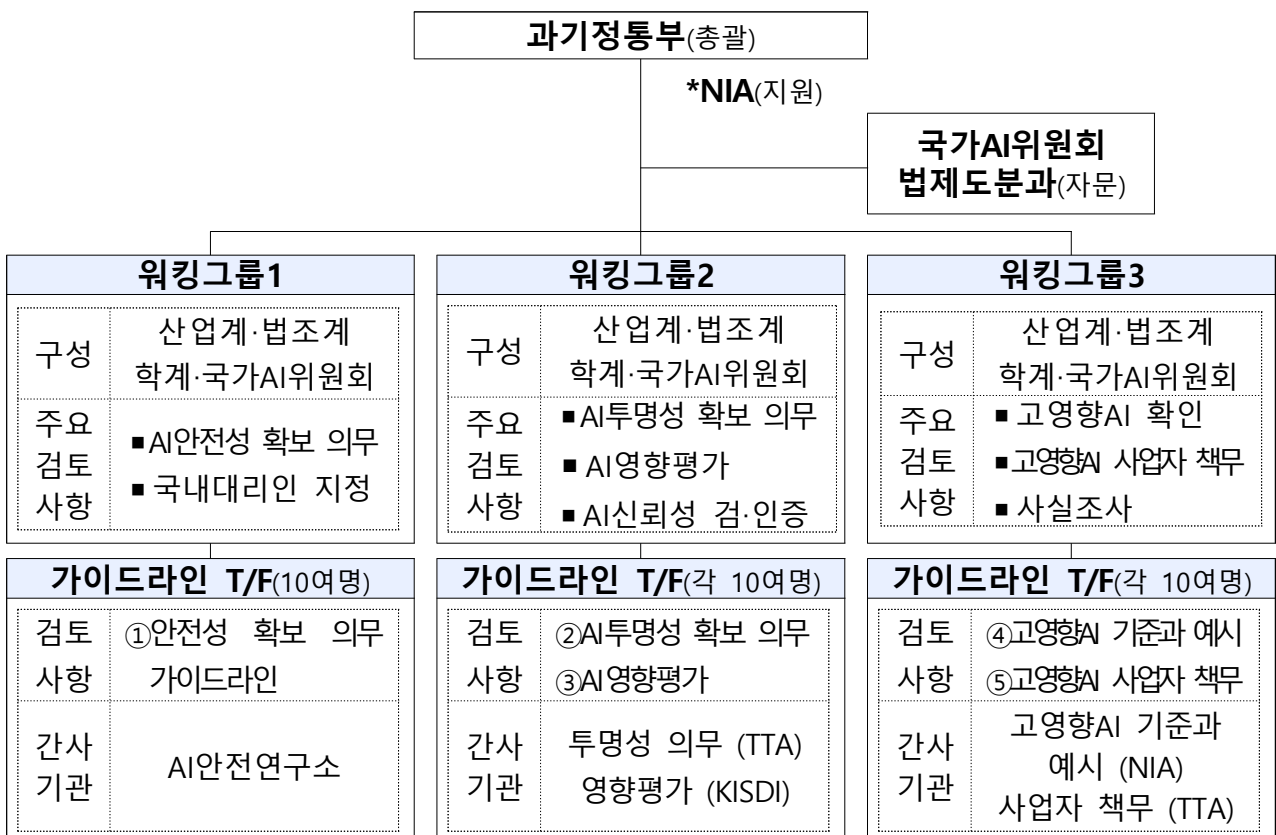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하위법령 정비단** : 과기정통부(총괄), 국가AI위원회, 산업계(초거대AI 추진협의회),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기관(NIA)으로 구성
  - 과기정통부와 산업계·법조계 중심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조항별 초안을 마련하고, 국가AI위원회 및 학계 자문 병행
  - 조항별 세부내용은 워킹그룹(3개 분과)을 통해 구체화하고, 전체 회의에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
  
- **가이드라인T/F** :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의무에 대하여 기업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T/F(각 10여명 내외) 운영
  - 특히, 고영향AI의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국가AI 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붙임 참고)



구분	구성
고영향시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 과기정통부, 국가AI위원회 지원단 공동</li> <li>▪ (참여전문가)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 및 민간전문가 20여명</li> <li>▪ (실무 지원) NIA</li> </ul>

< 가이드라인 목차 구성(안) >

구분	내용	집필 참여 인원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의 정의 및 구성요소</li> <li>▪ 인적범위* 및 물적범위** 명확화</li> </ul> <p>*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인공지능', '인공지능시스템', '고영향 인공지능'</p>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 및 민간 전문가	
분야별	▪ 에너지, 먹는물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 및 민간 전문가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 및 민간 전문가 + 관계부처 의견수렴	
	▪ 보건의료체계, 의료기기		
	▪ 원자력		
	▪ 범죄수사, 체포		
	▪ 채용		
	▪ 대출 심사 등		
	▪ 교통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 공공서비스			
▪ 교육			